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정 2002. 3. 29

개정 2012. 3. 1

개정 2017. 6.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청강학원정관 제56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징계위원회는 임면권자가 교원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심리 및 의결해야 하며, 징계의결 결과는 임면권 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17.6.26. 개정)

제3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제1조에 규정한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017.6.26. 개정)

제4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징계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학교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2017.6.26. 개정)

제6조(징계위원회 운영) 징계위원회는 교원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2017.6.26. 개정)

제7조(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삭제) (2017.6.26. 개정)

제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삭제) (2017.6.26. 개정)

제9조(제척사유) (삭제) (2017.6.26. 개정)

제10조(위원의 기피 등) (삭제) (2017.6.26. 개정)

제11조(징계의 종류) (삭제) (2017.6.26. 개정)

제12조(경고 및 주의처분) (삭제) (2017.6.26. 개정)

제13조(징계의결) (삭제) (2017.6.26. 개정)

제14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삭제) (2017.6.26. 개정)

제15조(징계사유의 시효) (삭제) (2017.6.26. 개정)

제1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2017.6.26. 개정)

제17조(운영세칙) (삭제) (2017.6.26.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계류 또는 종결된 징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제6호 서식> (삭제) (2017.6.26. 개정)